식품의약품안전처

식품의약품안전처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제목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령(제2171호)개정 · 공포 알림

1. 「약사법」이 개정(법률 제21109호, 2025. 11. 11. 공포, 2026. 11. 12. 시행)됨에 따라,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협의 대상 의약품을 정하고,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이 사업 관련 수수료 또는 실비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받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을 포함한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령이 2026.11.10.자로 개정 ·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2. 개정된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은 2026.11.10.자 관보, 국가법령정보센터(www.law.go.kr)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령(총리령 제2171호) 1부. 끝.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수신자 관계 기관(단체)

주무관	손한솔	사무관	이인선	의약품정책과장	김남수 전결 2026. 11. 10.
협조자					

시행 의약품정책과-9907 (2026. 11. 10.) 접수

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, 의약품정책과 / www.mfds.go.kr

전화번호 043-719-2621 팩스번호 043-719-2606 / shs3011@korea.kr / 대국민 공개